제정 2002년	! 03월 01일
1차 개정 2005년 03월 01일	2차 개정 2006년 03월 01일
3차 개정 2008년 08월 27일	4차 개정 2010년 04월 22일
5차 개정 2011년 03월 29일	6차 개정 2011년 09월 02일
7차 개정 2012년 06월 27일	8차 개정 2013년 10월 16일
9차 개정 2016년 02월 02일	10차 개정 2016년 03월 29일
11차 개정 2017년 07월 25일	12차 개정 2018년 05월 28일
13차 개정 2020년 05월 28일	14차 개정 2021년 08월 18일
15차 개정 2022년 11월 02일	16차 개정 2023년 03월 03일

-따뜻한 교실, 공감하는 학교, 꿈이 자라는 행복한 아미교육-

학교 규칙

17차 개정(안)



아미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미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아미초등학교는 꿈을 키워 미래를 창조하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본교는 아미초등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92번길 32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 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3. 개교기념일 : 5월 1일
- 4. 여름방학
- 5. 겨울방학
- 6. 학년말방학
- 7.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의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제4호, 제5호, 제6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로 한다.

제10조(학생 정원)

-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 수료 및 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및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육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해당 학년 기준)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으며 2회 사용 시 1일로 간주한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한다.(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의함)
 -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 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⑦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국내에 한해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

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지침에 의함)

⑧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 시할 수 있다.

제14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하여 출석 및 결석을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연간 20일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	학생 본인	20일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15조(학생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생평가는 교사별 상시 수행평가로서 성장중심평가를 실시한다.
-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④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자, 본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사회적 사정으로(전쟁, 내란, 천재 지변 등) 인하여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를 중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졸업처리를 한다.
- ⑤ 학교장은 명예졸업처리 후 명예졸업장은 명예졸업 대상자 관리에서 학적반영, 졸업처리에서 졸업생 학적을 반영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취학통 지를 받은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8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하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 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 등을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 및 전입한 학교에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여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년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력 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수립하여 구성, 운영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입학 연기(취학의무의 면제,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 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면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동일하다.
- ⑧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제23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장기결석한 학생

- ②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교육장에 보고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중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러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4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유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다.
 -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제28조 제2항, 제3항)
 -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 4. 그 외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④ 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목적 및 방침)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재

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④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의 장이「초、중등교육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수가 높은 자
 - 3. 국가기관이 주관·주최한 국내외 경시·경연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②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③ 조기진급 대상자는 현 학년 및 진급하고자 하는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평가 내용 및 시기, 방법 등 평가와 관련 된 사항은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 조기 이수 기준은 평가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 가 만점의 80%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를 인정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상급학교 조기입학)

-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 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78조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 내용 및 시기, 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은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

과목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90%이상을 넘어야 한다. 평과를 통고한 학생은 상 급학교 입학 번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8조(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따른 자격 수여 평가
 - 3.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학년 선정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업무 담당자, 평가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과 담임교사를 포함한다.
- ③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되며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 및 재취학 학생 교과목별 이수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및 재취학 학생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과 고사의 시행
 -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및 재취학 학생 교과목별 이수 인정 범위의 결정
- ⑦ 그 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 등 기타비용의 징수

제29조(비용의 징수)

- 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특기적성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시상 및 학생징계

제30조(학생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 치주의 사회현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시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시상)

- ① 학교의 장은 각종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표창의 종류, 대상과 시기 등은 학년 또는 교직원 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으며 시상 기준은 별도의 세부 시상계획에 의한다.
- ③ 시상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 ④ 외부 시상은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교권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0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학생자치회)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미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활동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학생자치회 규정에 포함하여 제정 운영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통합학급 운영

제35조(개별화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보호자, 특수학급 담임교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② 본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팀장 1인과 부팀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학급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는 대위원회와 각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팀장은 교장이, 부팀장은 교감이 되고, 대위원회에는 특수교사, 학부모 대표와 통합교사 대표가 참여한다.

- ⑤ 통합교사 대표는 통합교사 중 통합학급 담당경력이 많은 교사로 정한다.
- ⑥ 각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위원회에는 대위원회에서 결정된 방향에 따라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보호자가 참여하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자도 참여한다.
- ⑦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 2.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 3. 특수학급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 논의 적절한 배치 및 교과 통합, 방과후학교운영, 교통비 지원에 대한 논의
 - 4. 개별화교육계획의 방향 설정 및 수립 범위, 교수-학습 모형, 부모참여 방안 결의
 - 5. 개별화교육계획 심의
 - 6. 치료교육활동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선정
 - 7. 학생 개인별 과제수행 상황 평가
 - 8. 성취 목표 및 과제 분석에 대한 적절성, 지도 프로그램 개발, 부모 교육 및 훈련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 ⑧ 임기는 당해학년도로 한다.(1년)

제12장 학칙개정절차

제36조(학칙개정절차)

- ① 공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업중단 예방

제37조(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8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학칙은 상위 관련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상급기관의 지침 및 별도 규정에 따른다.